'14년도 국민연금기금 대여이자율 보고

- 민간보육시설과 유료노인복지시설 -

2013. 12. 6.

보건복지부
MINISTRY OF HEALTH & WELFARE

□ 보고배경

○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매년 민간보육시설과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적용할 대여이자율을 결정

※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【기금의 운용사업 등】② 법 제10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운용위원회가 정한다.

□ 대여이자율 결정 및 적용 기준(2004. 3월 기금운용위원회 의결)

○ (결정절차)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매년 4/4분기에 결정하여 다음연도 1년간 적용함

○ (적용기준) **이자율 결정 전 3개월간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**을 현행적용 이자율과 비교하여

- **±0.5%pt 이내일 경우 종전 이자율 적용**
- **±0.5%pt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재조정**

□ 2014년도 대여이자율 : 2013년도와 동일한 연 2.78% 적용

○ **'13년도 대비 0.49% 하락하여 종전 이자율 적용**

- 2013년도 대여이자율 : **연 2.78%**
- '13.9월~11월(3개월)간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: **연 2.29%**

※ 금융기관 취급 수수료율은 민간보육시설 1.0%, 유료노인복지시설 0.5%

<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(11개 금융기관)>

(단위 : %)

구 분	국민	우리	신한	외환	SC제일	씨티	하나	산업	기업	농협	수협	**평균**
'13.9.20.	2.30	2.20	2.25	2.40	2.45	2.10	2.50	2.25	2.30	2.40	2.15	2.30
'13.10.20.	2.10	2.20	2.25	2.40	2.45	2.10	2.50	2.25	2.30	2.40	2.15	2.28
'13.11.20.	2.10	2.20	2.25	2.40	2.45	2.10	2.50	2.18	2.30	2.40	2.15	2.28
평 균	2.17	2.20	2.25	2.40	2.45	2.10	2.50	2.23	2.30	2.40	2.15	**2.29**

참고 1	사회복지시설 대부사업 현황

○ 대부현황

('13.10.31.현재, 단위 : 억원)

구 분	대 여	상 환(%)	잔 액(%)
계	7,654	7,573(98.9%)	81(1.1%)
민간보육시설	6,788	6,730(99.1%)	58(0.9%)
노인복지시설	866	843(97.3%)	23(2.7%)

○ 융자조건

- 민간보육시설('94.10.1. ~ '98.12.31.)

구 분	이자율	대부한도액	상 환 조 건
건 축 비	3.78% (수수료1%포함)	9억원	8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
설 치 비		6억원	6년 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
기능보강비		6천만원	5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

- 유료노인복지시설('95.2.1. ~ '00.12.31.)

구 분		이자율	대부한도액	상 환 조 건
건축비	양로원, 노인복지주택	3.28% (수수료0.5%포함)	50억원	8년 거치 10년 분할상환
	요양원, 노인전문병원		60억원	
	2종이상 시설		70억원	
설치비	양로원, 노인복지주택		50억원	6년 거치 5년 분할상환
	요양원, 노인전문병원		60억원	
	2종이상 시설		70억원	

참고 2 대여이자율 및 조정내역

○ 민간보육시설

(단위 : %)

이자율 변동내역			변 동 근 거	변 동 이 유
변동일자	이자율	수수료		
'94.10. 1.	8.5	0.5	시행령 52조 (현행 74조)	▪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변동
'95. 2. 1.	8.5→9.1 (0.6%인상)	0.5		
'96. 2. 1.	9.1→7.5 (1.6%인하)	0.5	'96. 2. 1. 기금운용위원회 결정	▪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변동
'00. 8. 9.	7.5→5.5 (2%인하)	0.5	'00. 8. 9. 기금운용위원회 결정	▪ 융자보육시설들의 경영난과 시중금리의 하향안정화 추세
'01. 12 .6.	5.5→4.5 (1%인하)	1.0 (0.5% 인상)	'01. 12. 6. 기금운용위원회 결정	▪ 금융시장의 저금리추세 및 보육시설의 부실채권발생에 따른 취급금융기관 채권관리의 어려움을 일부 보전
'02. 12. 5.	4.5→4.5 (변동없음)	1.0	'02. 12. 5. 기금운용위원회 결정	▪ 금리안정화 추세로 현행유지
'03. 12. 4.	4.5→4.5 (변동없음)	1.0	'03. 12. 4. 기금운용위원회 결정	▪ 금리안정화 추세로 현행유지
'04. 4. 1.	4.5→3.6 (0.9%인하)	1.0	'04. 3. 12. 기금운용위원회 결정	▪ 금리안정화 추세 및 사회복지시설의 경영난
'05. 1. 1.	3.6→3.6 (변동없음)	1.0	'04. 12. 29. 기금운용위원회 결정	▪ 금리안정화 추세로 현행유지
'06. 1. 1.	3.6→3.6 (변동없음)	1.0	'05. 12. 22. 기금운용위원회 결정	▪ 금리안정화 추세로 현행유지
'07. 1. 1.	3.6→3.6 (변동없음)	1.0	'06. 12. 28. 기금운용위원회 결정	▪ 금리안정화 추세로 현행유지
'08. 1. 1.	3.6→3.6 (변동없음)	1.0	'07. 12. 27. 기금운용위원회 결정	▪ 금리안정화 추세로 현행유지
'09. 1. 1.	3.6→3.6 (변동없음)	1.0	'08. 12. 29. 기금운용위원회 결정	▪ 금리안정화 추세로 현행유지
'10. 1. 1.	3.6→2.78 (0.82%인하)	1.0	'10. 2. 25. 기금운용위원회 결정	▪ 전년도 이자율 대비 ±0.5%Pt 이상 변동하여 조정
'11. 1. 1	2.78→2.78 (변동없음)	1.0	'10. 11. 29. 기금운용위원회 결정	▪ ±0.5%Pt 미만 변동으로 현행유지
'12. 1. 1.	2.78→2.78 (변동없음)	1.0	'11. 11. 24. 기금운용위원회 결정	▪ ±0.5%Pt 미만 변동으로 현행유지
'13. 1. 1.	2.78→2.78 (변동없음)	1.0	'12. 12. 17. 기금운용위원회 결정	▪ ±0.5%Pt 미만 변동으로 현행유지

○ 유료노인복지시설

(단위 : %)

이자율 변동내역			변 동 근 거	변 동 이 유
변동일자	이자율	수수료		
'95. 2. 1.	9.1	0.5	시행령 52조 (현행 74조)	▪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변동
'96. 2. 1.	9.1→7.5 (1.6%인하)	0.5	'96. 2. 1. 기금운용위원회 결정	▪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변동
'01. 7. 25.	7.5→5.5 (2%인하)	0.5	'01. 7. 25. 기금운용위원회 결정	▪ 금융시장의 저금리 추세 및 유료노인시설의 경영난
'01. 12. 6.	5.5→4.5 (1%인하)	0.5	'01. 12. 6. 기금운용위원회 결정	▪ 금융시장의 저금리 추세
'02. 12. 5.	4.5→4.5 (변동없음)	0.5	'02. 12. 5. 기금운용위원회 결정	▪ 금리안정화 추세로 현행 유지
'04. 12. 4.	4.5→4.5 (변동없음)	0.5	'03. 12. 4. 기금운용위원회 결정	▪ 금리안정화 추세로 현행 유지
'04. 4. 1.	4.5→3.6 (0.9%인하)	0.5	'04. 3. 12. 기금운용위원회 결정	▪ 금리안정화 추세 및 사회복지시설의 경영난
'05. 1. 1.	3.6→3.6 (변동없음)	0.5	'04. 12. 29. 기금운용위원회 결정	▪ 금리안정화 추세로 현행유지
'06. 1. 1.	3.6→3.6 (변동없음)	0.5	'05. 12. 22. 기금운용위원회 결정	▪ 금리안정화 추세로 현행유지
'07. 1. 1.	3.6→3.6 (변동없음)	0.5	'06. 12. 28. 기금운용위원회 결정	▪ 금리안정화 추세로 현행유지
'08. 1. 1.	3.6→3.6 (변동없음)	0.5	'07. 12. 27. 기금운용위원회 결정	▪ 금리안정화 추세로 현행유지
'09. 1. 1.	3.6→3.6 (변동없음)	0.5	'08. 12. 29. 기금운용위원회 결정	▪ 금리안정화 추세로 현행유지
'10. 1. 1.	3.6→2.78 (0.82%인하)	0.5	'10. 2. 25. 기금운용위원회 결정	▪ 전년도 이자율 대비 ±0.5%Pt 이상 변동하여 조정
'11. 1. 1	2.78→2.78 (변동없음)	0.5	'10. 11. 29. 기금운용위원회 결정	▪ ±0.5%Pt 미만 변동으로 현행유지
'12. 1. 1.	2.78→2.78 (변동없음)	0.5	'11. 11. 24. 기금운용위원회 결정	▪ ±0.5%Pt 미만 변동으로 현행유지
'13. 1. 1.	2.78→2.78 (변동없음)	0.5	'12. 12. 17. 기금운용위원회 결정	▪ ±0.5%Pt 미만 변동으로 현행유지